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77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서삼석 · 허영 · 박용갑
박수현 · 위성곤 · 문금주
이성윤 · 황운하 · 김원이
신정훈 · 이병진 · 문대림
박홍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
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복지·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태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
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
다. 이로 인해 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
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
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농어

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6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
금의 전출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 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 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⑥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 <u>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u> 」 <u>제27조에 따른 농어촌주민기 본소득기금의 전출금</u>
<u>7.</u> (생 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